제11조(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제12조(생태계보전지역내 행위의 중지명령),
제32조(과태료)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2004. 3. 31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 규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조항으로 규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규제법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제 일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몰제를 채택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칙 제2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고)①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환경훼손의 사항
2.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③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중 제2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6.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제2호중 “자연의 상태”를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중 “악취 등”을 “악취, 일조 등”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악취”를 “악취, 일조방해”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친환경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10.서울의제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고)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환경훼손의 사항
2.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지방의제21 제정 및 실천 등에 관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제2항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기본계획 등"을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제5항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구환경의 보전)"을 "(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영향검토)"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영향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③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은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지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4.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